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건태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9023

발의연월일: 2025. 3. 18.

발 의 자:이건태・김 윤・박지원

이재관 · 김승원 · 정진욱

권향엽 • 이기헌 • 강준현

문진석 • 황정아 • 최민희

이병진 · 이정헌 · 김문수

이워택 • 유준병 • 이용우

문금주 의원(19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성인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한글 문해교육의 실시 근거를 두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한글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비, 교재비·교구비, 교원의 인건비 및 연수비 등 현행법령에 따른 재정적 지원에도 프로그램 실시기관에서 문해교육에 참여하는 수강생으로부터 별도의 수업료 등을받는 경우가 있고, 이로 인해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는 비문해자가 경제적인 부담으로 프로그램 참여를 주저하거나 포기하는 사례가발생하고 있음.

한글 문해교육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필수 지원에 해당하는 바, 개정안은 한글 문해교육 참여자가 부담하는 수업료, 교재비·교구비 등의 비용을 무상으로 하고 해당비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비문해자에게 실질적인 배움의 기회를 보장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39조제4항 신설).

법률 제 호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평생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한글 문해교육에 필요한 수업료, 교재비·교구비 등의 비용은 무상으로 한다. 이 경우 해당 비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부 칙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9조(문해교육의	실시	등)	1	제39조(문해교육의 실시 등) ①
~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u><신 설></u>				④ 한글 문해교육에 필요한 수
				업료, 교재비·교구비 등의 비
				용은 무상으로 한다. 이 경우
				해당 비용은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가 부담한다.